

2022년도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의안 번호	23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22년 7월 13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가.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 규정*에 따라 2022년도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

*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2. 주요내용

가.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른 「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」 여유재원 296억 46백만원을 전입받아 예치금으로 지출하고자 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함

나. 운용규모 : 496억 46백만원 (당초계획 대비 296억 46백만원 증가)

<수입계획>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당초계획 (A)	변경계획 (B)	증감 (B-A)
계	20,000	49,646	29,646
전입금	20,000	49,646	29,646

<지출계획>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당초계획 (A)	변경계획 (B)	증감 (B-A)
계	20,000	49,646	29,646
예치금	20,000	49,646	29,646

○ 수입계획 변경

- 전입금 수입 : 29,646백만원 증가 (20,000 → 49,646백만원)

- 「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」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중 여유재원 296억 46백만원 수입

○ 지출계획 변경

- 예치금 : 29,646백만원 증가 (20,000 → 46,646백만원)

- 「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」 전입금 296억 46백만원 수입에 따라 예치금 증가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